대법원 2017도19499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5. 15. 정유라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건에서, 피고인 최서원의 사문서위조미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최서원, 최경희(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남궁곤(전 입학처장), 이원준(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I. 사건 개요 및 소송 경과

■ 사건 개요

- 피고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람이고, 정유라는 그 딸로서 청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체육특기자 전형'에 합격하여 2015. 3.경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였음
- 피고인 최경희(과학교육과 교수)는 2014. 7. 29.~2016. 10. 20. 이화여대 총장, 피고인 남궁곤(정치외교학과 교수)은 2014. 8. 1.~2016. 10. 30. 이화여대 입학처장, 피고인 이원준(체육과학부 교수)은 2015. 2. 1.~ 2017. 1.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장으로 재직하였음
-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피고인 최서원 : ① 대한승마협회장 등의 허위 공문을 이용하여 정유라 가 출석 또는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공립학교인 청담고 교사들의 학사관리 관련 공무집행 방해, ② 청담고 체육부장 교

사에게 뇌물 30만 원 공여, ③ 청담고 체육교사 OOO의 수업 방해, ④ 대한승마협회장 명의 사문서 위조 미수

- 피고인 최서원, 최경희, 남궁곤: 「피고인 최서원 ↔ 당시 문화체육부차관 김종 ↔ 당시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학장 김경숙 ↔ 피고인 남궁 곤 ↔ 피고인 최경희」가 차례로 공모하여, ① 피고인 남궁곤이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입시 면접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정유라가 높은 면접 점수를 받도록 하여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방해, ② 피고인 남궁곤, 최경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교무회의에서 정유라를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사정 안건을 의결하게 하여 위계로 교무위원들의 신입생 모집과 사정 업무 방해 (⑤)
- 피고인 최서원, 최경희, 이원준 : 이인성(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이경옥(체육과학부 교수), 유철균(필명 이인화,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등 과 공모하여 수업에 전혀 또는 거의 참석하지 않은 정유라가 출석과 학 점을 인정받도록 하여 이화여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 등을 방해 (⑥)
- 피고인 최경희, 남궁곤 : 위 사안 등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 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증(②)
- **피고인 남궁곤** : 위 입시비리와 관련하여 증거가 될 문서 파일을 조작해 교육부 감사관들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감사관들의 감사업무 방해(③)

■ 제1심 및 원심 판단

- 제1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대체로 원심과 동일함), 피고인 최서원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최경희에 대하여 2년, 피고인 남궁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이원준에 대하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함
- 원심은 아래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인 이원준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

기한 다음,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 최서원의 사문서위조미수 부분 : 무죄
- 피고인 최서원의 청담고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출석 및 봉사활동 시간 인정),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부분 : 정유라가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인정X

■ 쌍방 상고 제기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음

Ⅱ. 대법원 판단 요지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최서원의 단독 범행(●~❸)

- 학사관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이를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 피고인과 금품을 수수한 교사와의 관계나 금품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도 정당함

나. 피고인 최서원, 최경희, 남궁곤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4)

-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함.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됨.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피고인 최서원 ⇔ 당시 문화체육부 차관 김종 ⇨ 당시 이화여대 건강과학 대학 학장 김경숙 ⇨ 피고인 남궁곤 ⇨ 피고인 최경희」가 차례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인들을 이 부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①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나 대학 총장과 입학처장으로서 피고인 최경 희, 남궁곤이 지닌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 ② 피고인 남궁곤이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가 비선실세 정윤회의 딸이라는 사실 및 정유라를 선발하는 것이 자신과 총장의 뜻임을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점, ③ 입학처장이 면접위원들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총장의 뜻임을 밝히면서 공공연하게 위와 같이 명백하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황에서 면접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면접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실제로 면접 결과 정유라가 경쟁자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점, ⑤ 일부 면접위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남궁곤은 자신과 정윤회, 피고인 최경희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하였고, 이는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게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면접평가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이화여대 학칙 등에 따라 이화여대의 입학에 관한 업무가 총장인 피고인 최경희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면접업무는 면접위원들에게, 신 입생 모집과 사정업무는 교무위원들에게 각 위임되었고, 위임된 업무는 그 수임자들의 독립된 업무에 속함. 따라서 총장인 피고인 최경희가 이를 방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다. 피고인 최서원, 최경희, 이원준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 남궁곤, 최경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남궁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⑤~⑥)
 -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 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남궁곤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다음 의도적으로 입학처장실 컴퓨터에 조작한 파일을 남겨두었고, 그것이 입시비리와 관련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감사관들이 나름대로 충실히 위 파일을 조사하였음에도 그 조작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남궁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

라. 피고인 최서원의 기타 주장에 관하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자기 명의로 수사와 공소유지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거나, 특별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등 소송행위가 위헌적이어서 모두 무효라는 피고인 최서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2. 특별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은 '피고인 최서원 등이 공모하여 대한승마협회장 명의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를 컴퓨터 파일(*.hwp) 형태로만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송부한 것은, 그 파일을 출력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종전 판례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청담고 학사관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부분 중 피고인들이 '정유라와 공모하여' 위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Ⅲ. 판결의 의의

- 이 판결로「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한 사건 중 피고인 최서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됨
-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대학 총장인 피고인 최경희, 입학처장인 피고 인 남궁곤 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에 의해서

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과 입학 업무에 관한 최종 권한이 대학교 총장에게 속한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면접위원들이나 교무위원들의 업무 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 등을 분명히 밝힌 판결임

● 한편,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와 관련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학장 김경숙에 대해서도 같은 날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음(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7 판결)